

#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

## 관리계획안

[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]

# 심사보고서

2024. 11. 28.

도시환경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2024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
(두류역 서한포레스트 관련 공영주차장 기부채납)
- 발의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주차관리과장)
- 발의일자: 2024. 11. 6.
- 회부일자: 2024. 11. 6.
- 상정 및 의결: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 
(2024. 11. 28.)

### 2. 제안이유

- 두류역 서한포레스트(두류동 138-2번지 일원)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조건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포함됨에 따라 사업부지 인근에 조성된 공영주차장 3개소를 두류동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기부채납 받고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원룸 및 주택밀집지역 내 주차난을 일부 해소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#### 가. 취득대상 현황

구 분			2024년			합 계			비 고
			건 수	면 적	금 액	건 수	면 적	금 액	
취 득	기부채납	토지 (주차장)	3	629.3	1,041	3	629.3	1,041	공시지가 및 순공사비 반영
		기타	5	-	44	5	-	44	

## 나. 추진배경

- 두류동 주거복합 신축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조건(승인권자: 대 구시)
-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

## 다. 추진경과

- '21. 4월: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승인 고시
- '23. 7. ~ '24. 3월: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협의(區↔조합)
- '24. 6. ~10월: 부지정리 및 공영주차장 조성공사(조합), 최종 점검(區)

## 라. 향후계획

- '21. 11. ~12월: 공유재산 심의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
- '24. 12월: 공영주차장 기부채납
- '25. 1월: 주차장 개장(예정)

## 4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8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
-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12조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두류동 138-2번지 일원 서한포레스트 주택건설사업 주체 인 두류동 지역주택조합이 조성한 공영주차장 3개소 등을 기부채납

받고자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0조의2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한 것임.

- 본 안건의 주요내용은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포함한 조건으로 승인된 서한포레스트 주택건설사업의 주체인 주택조합이 사업부지 인근에 3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에 따라 이를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, 취득대상은 토지 3필지, 면적 629.3㎡ 주차면수 총 22면인 공영주차장 3개소와 상록어린이공원 내 휴게시설인 파고라 2개, 운동기구 3개를 2024. 12월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계획임.
- 따라서 본 계획은 두류동 주거복합 신축 주택건설사업 주체로부터 승인조건이행에 따른 공영주차장 3개소 등을 기부채납 받음에 따라 단독주택과 원룸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**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약:** 특이사항 없음

**7. 심사결과:** 원안가결